

‘외래 관광객 유치 및 청주공항 활성화’를 위한 업무 협약서

대전관광공사,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, 대전광역시, 대전관광협회(이하 “각 기관”이라 한다)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외래 관광객 유치 및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협약은 외래 관광객 유치 및 청주공항 활성화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, 각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협력내용) 각 기관은 공동 목적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하며, 이 협약에 따라 추진할 업무협력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항공·교통·관광 제도개선 및 협력사업 지속 발굴
2. 각 기관별 홍보시설 및 수단을 통한 상호 지원
3. 각 기관별 주요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
4.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기관별 협의를 거쳐 공동 추진

제3조(협약기간) 이 협약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2025. 12. 31. 까지로 한다. 단, 본 협약 만료 3개월 전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협약의 변경 또는 폐기기에 관한 서면 통지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
제4조(비밀유지) 각 당사자는 상호 교류를 통해 인지한 타 기관의 업무내용이나 이와 관련한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동사업 추진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로 누출할 수 없다.

제5조(법적 구속력) ① 이 협약은 당사자의 상호 업무에 관한 우호적 협력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제4조(비밀유지)를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.

② 각 당사자는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, 의무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할 수 있다.

제6조(신의성실원칙) 본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사이의 상호 협력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.

제7조(기타) 이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처리한다.

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상호 확인하고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대표자가 본 협약서에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4년 8월 29일



사장 윤성국



청주공항장 김공덕

윤성국

김공덕



시장 이장우



회장 이희병

이장우

이희병